

늘봄·방과후학교 스내그골프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경상남도교육청과 한국스내그골프협회(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는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늘봄·방과후학교 프로그램(스내그골프교육)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각 협약기관이 교육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보유 자원·정보 및 인력 등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늘봄·방과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과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협약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공익추구의 원칙에 따라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3조(협약내용) 협약기관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며,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1. 협력분야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 역량의 교류 및 자원 활용
2. 늘봄·방과후학교 스내그골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늘봄·방과후학교 스내그골프교육 프로그램 우수강사 인력 양성 및 지원
4. 늘봄·방과후학교 스내그골프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 종료 합의가 있을 때까지 변경되거나 해지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된다. 다만, 협약기관이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밝힐 경우, 그 다음 연도부터 협약을 종료한다.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본 협약체결 후 각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변경 등 주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 협약서에 따른 권리·의무는 포괄 승계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비밀유지) 협약기관은 본 협약의 체결 및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상호 사전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독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리고 협약기관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해지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효력을 잃은 후에도 유지된다.

제7조(협약의 해지) 협약 기관은 대내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시 상호 합의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상대방에게 사전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조정)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협약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협약기관 간 협의하여 별도로 조정 또는 결정한다.

제9조(협약서의 작성 및 보관)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 대표가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6월 20일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Handwritten signature of Park Jong-hoon in black ink.



한국스내그골프협회장

김형달

Handwritten signature of Kim Hyeong-dal in black ink.